

특집

양돈자조금제도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양돈자조금제도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1. 서 론

지난 9월 2일 개최하였던 ‘제2차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선출구별 대의원수 및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주요 선거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의원 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추진 실무단에서는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와 투·개표장소를 확정하고, 대의원 선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국 축산 농가들의 숙원사항인 자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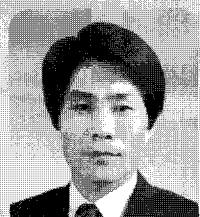
이에 필자는 그동안 공동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을 토대로 양돈자조금제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본 론

가.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 및 선거권자 확정

양돈농가가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출구별로 양돈업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대의원은 선출구별 농가수와 사육규모(50:50)를 고려하여 선출하되, 양돈의 경우 대의원의 총수를 200명으로 한다고 볍에 명시되어 있다.

세부적인 대의원수 배분 방법 및 내역에 관하여는 이번호에 실린



김동성 전무
대한양돈협회

특집 / 양돈자조금제도 언제, 어떻게 시행되니?

'시·군별 양돈자조금 대의원 배정 내역'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선거권자 및 선거기간을 확정함에 있어 논란이 많았으며, 가장 비중있게 논의되었다.

제1차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이미 선거권을 30두 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에게만 주기로 결정했지만, 농림부와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위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2차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전농가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하였다.

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는 선거권자를 농업·농촌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위현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 농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수는 10,870호로 전체 농가수(15,640호)의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육규모는 10,111천두로 전체 사육규모(10,141천두)의 99.7%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선출구별로 유효 투표수(선출구안에 있는 양돈업자의 과반수 또는 사육두수의 2/3 이상 투표에 참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일부 농가 및 관계자들은

힘들게 만든 축산자조금법이 시행도 제대로 못해보고 사장될 수도 있을 거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농가 계도·홍보 활동을 보다 더 열심히 하고, 농가 역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준다면 큰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투·개표장소 선정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 선거일은 11월 12일로 결정했으며, 선거기간은 1일간이지만 유효투표수가 미달한 선출구는 익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선출구별 투·개표장소는 양돈협회 지부(회)와 지역축협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합의가 안되는 지역은 우선 공동추진 실무단에서 중재를 하고, 중재가 안될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출구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양돈협회 지부(회)와 지역축협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양돈협회 지부



(회)와 지역축협에서 각 15명 내외에서 구성하되, 선거관리 위원장은 공동 수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에 공동추진 실무단에서는 지난 9월 9일 선출구별 양돈협회 지부(회)와 지역축협에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실시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협조문을 보냈으며, 대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회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되면,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선출된 대의원의 2/3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전국 양돈농가들에게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게되며, 거출금액(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의 5/1,000이내)이

있으며, 수납기관은 도축되는 돼지 전두수에 대해 의무 징수를 실시하여 수납한 거출금을 축산단체(주관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농가에게서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 거출금에 상응하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양돈자

◎ 양돈자조금 설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02. 5. 13) →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02. 11. 14) → 양돈자조활동자금사업 추진계획 농림부 제출(‘02. 12. 30) → 전국 가축사육두수 조사(‘03. 2~7) → 대의원 선거(11. 12) → 대의원회 개최(자조금 거출여부 및 거출금액 의결) → 양돈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 개최(사업계획 수립→농림부 제출) → 농림부 승인 → 거출금 조성(축산업자→수납기관→축산단체) → 양돈자조활동자금사업 시행(‘04. 1. 목표)

원 선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대의원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9월부터는 농가 계도 · 홍보 활동을 위해 리플렛, 전단,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농가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10월초에는 권역별 선거종사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다. ‘대의원회’ 개최 및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설치

확정되면 양돈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돈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과반수는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의 승인이 나면 수납기관(도축장)에 거출금 납부에 대한 수납을 위탁할 수

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결 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으로 인해 WTO 체제하에서 양돈농가 스스로 양돈산업을 지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품목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아빠, 우리 내일 또 돼지고기 먹어요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집중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수출부위(안·등심, 후지) 소비 확대를 유도함은 물론, 나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산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돈자조금이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자조활동 자금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02. 12. 30) 하며, 농가가 출하돈 1두당 400원을 거출할 경우 약 60억

또한, 앞으로는 양돈 현안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양돈인 및 소비자 교육사업, 돈가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15만두×400원/두)을 조성할 것을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이에 농림부에서도 '04년 정부 보조금 예산을 60억원을 책정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

위와 같이 시행이 된다면 양돈의 경우 연간 120억원의 예산으로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자조금은 농가들이 조성한 금액 만큼,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대로 사용되고,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뒤따르게 된다.

양돈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돈자조금제도는 WTO 체제하에서 양돈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있는 마지막 제도 장치인 만큼,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공동추진 실무단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니 농가들은 물론, 관련 업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양돈**

※ 양돈자조금사업 계획(안)

구 분	세부 사업내역
소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 라디오 · 신문 · 잡지 광고 등 • 양돈 관련 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돈육요리(수출부위 중점) 개발 및 보급 •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교육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인 및 소비자 교육 : 연수회,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등 • 정보 제공 : 양돈관련 정보 및 사례 제공 등 • 양돈관련 제반 대책 교육 및 협의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관련 통계 조사 : 생산비 조사, 전업농가 경영실태 조사 등 • 자조금 사업 효과 분석 • 양돈관련 제반 사항 조사 및 연구사업 등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가 안정을 위한 양돈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사업 등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